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026

발의연월일: 2021. 6. 23.

발 의 자:권명호·강기윤·구자근

김도읍 · 송언석 · 엄태영

유상범 • 이만희 • 최춘식

최형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, 국 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전담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발 생하면 국방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,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(안 제11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	개 정 안
제11조(전담기관)	1 • 2	(생	제11조(전담기관) ①・② (현행과
략)			같음)
<u><신 설></u>			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
			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
			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
			실시하여야 한다.
③ (생략)		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